

# 노동부령 2022년 18호 관련 주요 내용

※ 동 자료는 노동부령 2022년 18호(Permenaker No 18 Tahun 2022) 원문을 비 공식적으로 번역한 것이므로, 반드시 해당 규정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동 규정에 대한 해석권한은 인니 소관부처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## 1. 최저임금 조정 산식

-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

$$UM(t+1) = UM(t) + (\text{조정 } UM \times UM(t))$$

\* 조정 UM = 인플레이션 + (경제성장 × α)

\* α =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의 기여를 나타내는 수치로 0.1~0.3 범위 내의 특정 지수

※ 관련 데이터는 통계분야 권한 당국의 자료를 참고

< 참고 > 기존 정부령 2021년 36호에 따른 조정산식

- 해당 지역 최저임금 상·하한, 경제성장률,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

$$M(t+1) = UM(t) + \text{Max}(\text{제성장률, 인플레이션}) \times \frac{UM(t)\text{상한선} - UM(t)}{UM(t)\text{상한선} - UM(t)\text{하한선}} UM(t)$$

\*  $UM(t)$  상한선 =  $\frac{1\text{인당평균소비액} \times \text{평균가구원수}}{\text{가구당평균근로자수}} UM(t)$

\*  $UM(t)$  하한선 = 최저임금 상한선의 50%

※ 관련 데이터는 통계분야 권한 당국의 자료를 참고

## 1-1 시/군최저임금(UMK)이 확정되지 않은 시/군의 경우 산식

- 구매력 등가, 인력고용, 중위임금에 따라 산정

- (구매력등가율)  $UMK(f1) = \frac{\text{시/군 PPP}}{\text{전 PPP}} \times UMP(t)$

\* PPP(purchasing power parity, rasio paritas daya beli): 구매력 등가(3년평균)

- (인력고용)  $UMK(f2) = \frac{1 - \text{시/군 TPT}}{1 - \text{전 TPT}} \times UMP(t)$

\* TPT(unemployment rate, tingkat pengangguran terbuka): 실업률(3년평균)

- (중위임금)  $UMK(f3) = \frac{\text{시/군 Median Wage}}{\text{전 Median Wage}} \times UMP(t)$

\* Median Wage, Median Upah: 중위임금(3년평균)

- (시/군 최저임금)  $UMK(t+1) = \frac{UMK(f1) + UMK(f2) + UMK(f3)}{3}$

## **2. 최저임금 인상 한도**

- 최저임금 조정은 10%초과해서는 안됨
- 최저임금의 조정 산정결과에 있어서, 10%를 초과하는 경우, 주지사는 최저임금의 조정치를 최대 10%로 결정
- 만약 경제성장률이マイ너스일 경우, 조정임금의 조정은 오직 인플레이션 변수만 고려함

## **3. 주 최저임금**

- 주지사는 늦어도 2022.11.28일 주최저임금을 의무적으로 결정함
- 최저임금 조정산식에 따라 주임금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산정
- 주임금위원회의 조정은 지방노동청을 통해 주지사에 추천
- 주임금위원회의 권고 결과가 조정산식과 부합하지 않으면, 주지사가 조정산식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

## **4. 시/군최저임금**

- 주지사는 시/군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음
  - 시/군최저임금은 2023년 12월 7일까지 결정됨
- 시/군최저임금은 주최저임금 결정 후 결정됨
- 시/군최저임금은 시/군임금위원회에서 산정하여 시장/군수에게 전달되고, 지방노동청을 통해 주지사에게 추천
- 시/군최저임금이 주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주지사가 시/군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음
- 시/군최저임금이 주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, 시장/군수는 주지사에게 추천할 수 없음
- 시장/군수의 추천결과가 조정산식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, 주지사는 최저임금 조정산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

## **5. 주최저임금 및 시/군최저임금의 발효 : 2023년 1월 1일**